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65

발의연월일: 2025. 3. 20.

발 의 자:김태선·김남근·박홍배

정준호 • 이학영 • 윤종군

박 정 • 한민수 • 김태년

박해철 • 맹성규 • 윤준병

이용우 · 김주영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행정기본법」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·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,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,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'재심사', '재검사', '재심'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, 합리적인 사유 없이 「행정기본법」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한 · 연장기한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, 처리기한 · 연장기한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.

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「행정기본법」 내용에 부합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18조의2).

법률 제 호

초・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제1항 중 "받은"을 "통지받은"으로, "15일"을 "30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30일"을 "14일"로, "통보하여야"를 "통지하여야"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심청구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의2(재심청구) ① 제18조제	제18조의2(재심청구) ①
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	
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	
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	
치를 <u>받은</u> 날부터 <u>15일</u> 이내	<u>통지받은</u> <u>30일</u>
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	
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	
의3에 따른 시·도학생징계조	
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	
있다.	
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·도학	②
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	
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<u>30일</u>	14일
이내에 심사・결정하여 청구인	
에게 <u>통보하여야</u> 한다. <u><단서</u>	<u>통지하여야</u> <u>다만, 부득</u>
<u>신설></u>	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
	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
	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
	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
	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
	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